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5. 2. 11.>

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
신고인	법인명(상호)	신고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
	대표자의 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	전자우편주소	사업자등록번호
	인터넷도메인 이름	호스트서버 소재지

신고 사항	변경 전
	변경 후

변경 사유	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첨부서류	1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. 통신판매업 신고증(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※ 신고증을 분실・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수수료 없음
	[신고증 분실・훼손 사유]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신고 수리	➔	신고증 변경사항 기재	➔	신고증 재교부

신고인 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

210㎜× 297㎜[백상지 80g/㎡]